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지침에 따라 임원 구성과 절차를 간소화하여 융통성 있는 재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 범위 명확화, 임원 후보 추천절차 수정(안 제7조제3항)
- 나. 당연직 이사 구성 내용 삭제(안 제7조제4항)
- 다. 선임직 이사 구청장 임명 내용 삭제(안 제7조제4항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: 2022. 12. 29. ~ 2023. 1. 18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▶ 부서의견: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제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수정의결(2023. 1. 19.)

원 안	수 정 안
<p>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<u>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</u>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 <u>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 -----.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”를 “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구분하되 당연직 이사는 구의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, 선임직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한다”를 “구분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삭제</p> <p>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, <u>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</u>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④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외의 이사는 <u>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되</u> <u>당연직 이사는 구의 관광경제국장</u>과 <u>재정관리 국장으로</u> 하고, <u>선임직 이사는 구청장이</u> 임명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 <u>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</u>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 <u>구</u> <u>분한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
해당하지 않음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재정관리국 디지털재정과 전형준
연 락 처	02-3153-8533